도봉역 한양수자인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방침에 따라 인터넷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하시기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도봉구청 산업환경과 - 38756호(2008. 11. 24)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2동 632-7번지 일대

■ **공급규모** : 지하 3층, 지상 15층 1개동 아파트 8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중 아파트 일반공급 73세대
(도봉시장 정비사업조합 공급세대 중 일반공급분) (3자녀 특별공급 2세대 포함)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단위 : ㎡, 원)

구분	아파트 코드	주택관리번호 (모델번호)	주 택 형	세대별계약면적 공급면적 주거전용	주거공용	소 계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계약면적	세대당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민영주택	22102-01	2008001023 (01)	109.69(A)	84.46	25.23	109.69	44.79 (40.99)	154.48	25.64	17
	22102-02	2008001023 (02)	109.83(B)	84.46	25.37	109.83	44.79 (40.99)	154.62	25.64	3
	22102-03	2008001023 (03)	109.62(C)	84.46	25.16	109.62	44.79 (40.99)	154.41	25.64	17
	22102-04	2008001023 (04)	109.85(E)	84.99	24.86	109.85	45.08 (41.25)	154.93	25.80	20
	22102-05	2008001023 (05)	147.32	114.62	32.70	147.32	60.79 (55.63)	208.11	34.81	12
	22102-06	2008001023 (06)	151.36	116.43	34.93	151.36	61.76 (56.51)	213.12	35.36	4

주택형	층별 구분	세대수	세대당 분양가격(원)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합 계	계약금 (계약시)	중도금 1회 (09.02.25)	2회 (09.06.25)	3회 (09.10.26)	4회 (10.02.25)	5회 (10.06.25)	6회 (10.10.25)	잔 금 (입주지정일)
109.69 (A)	최고가	17	211,181,738	190,818,262	-	402,0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최저가			144,818,262	-	356,0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106,800,000
109.83 (B)	최고가	3	211,181,738	191,818,262	-	403,0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40,300,000	120,900,000
	최저가			168,818,262	-	380,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109.62 (C)	최고가	17	211,181,738	190,818,262	-	402,0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40,200,000	120,600,000
	최저가			144,818,262	-	356,0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35,600,000	106,800,000
109.85 (E)	최고가	20	200,537,270	175,462,730	-	376,0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37,600,000	112,800,000
	최저가			142,462,730	-	343,0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34,300,000	102,900,000
147.32	최고가	12	277,864,134	219,214,424	21,921,442	519,0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51,900,000	155,700,000
	최저가			178,305,333	17,830,533	474,0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47,400,000	142,200,000
151.36	-	4	296,795,732	214,731,153	21,473,115	533,0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53,300,000	159,900,000

- 상기 공급금액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음(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 3 의거)
- 상기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의하여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임.
- 상기 공급금액은 주택형별 가격이며, 세대별 분양가격은 층별, 향별, 개방감 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차등 적용하오니 견본주택이나 배포된 인쇄물을 참고하시기 바람.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등록세, 취득세 등이 미 포함되었으며,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주택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 상기 세대별 개인면적에는 지하주차장 및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 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음.
- 사업주체가 장래에 대한주택보증(주) 또는 대한주택보증(주)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봄.
- 소수점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 할 수 있음.
- 상기 세대당 대지지분은 전용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소유권이전등기시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될 수 있음.
- 전산검색 결과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된 경우 당첨자로 관리하며, 청약예금 통장의 재사용이 불가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납부할 수 있으며,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입주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납부하여야 함.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한다)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중도금 납부기준공정시점 이후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건설업체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
- 당 사업지는 정부의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3자녀이상 무주택세대주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적용주택으로 공급평형별 3%를 특별 공급함.

▣ 발코니 확장옵션 공급금액

(단위 : 원/부가세 포함)

주택형(㎡)	안방/드레스룸	침 실 1	침 실 2	침 실 3	거 실	주방/식당	계	비 고
109.69(A)	1,100,000	1,100,000	1,100,000	-	4,400,000	5,500,000	13,200,000	
109.83(B)	1,100,000	1,100,000	1,100,000	-	3,300,000	5,500,000	12,100,000	
109.62(C)	1,100,000	1,100,000	1,100,000	-	4,400,000	5,500,000	13,200,000	
109.85(E)	1,100,000	2,200,000	1,100,000	-	4,400,000	3,300,000	12,100,000	
147.32	3,300,000	2,200,000	1,100,000	1,100,000	5,500,000	6,600,000	19,800,000	
151.36	2,200,000	1,100,000	2,200,000	-	5,500,000	8,800,000	19,800,000	

-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부가세포함)은 아래 표의 해당금액으로, 발코니 확장공사에 따른 공사비용은 분양가에서 제외되어 있음.
- 발코니확장 공사비(부가가치세 포함)는 확장으로 인해 기존설치항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설치항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1. 무주택 3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 19조 제6항 (2세대)]

(단위 : ㎡, 세대)

면적구분(전용면적)	신청자격	거 주 구 분	접수일자	청약접수 장소 / 시간	추첨 및 당첨자발표
전 주택형	특별공급 신청자격 구비자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2008. 11. 29	당사 견본주택 / 10:00~14:00	2008. 11. 29 / 당사 견본주택 / 15:00

주 택 형 (㎡)	109.69(A)	109.83(B)	109.62(C)	109.85(E)	147.32	151.36	계
서울특별시 거주자	-	-	-	1	-	-	1
경기도 거주자	-	-	-	1	-	-	1

- 주택형별 공급 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 40%, 인천시 거주자 10%에게 각각 공급함.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11. 25)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청약예금가입 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단,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 제한기간 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자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당첨은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 처리함.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 (접수장소에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 · 도 거주기간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11. 25)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 (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아래 해당자에 한함) ①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미혼 · 이혼 · 사별 · 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 · 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5. 7. 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 · 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자격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우선순위 배점표(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 점 요 소		총배점	배 점 기 준 기 준	점수	비 고
계		100			
자녀수 (1)	1순위 미성년 자녀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1순위 영 · 유아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 (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 존비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세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이어야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 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 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 5년 미만	10	
당해 시 · 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시는 특별시 · 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 경기 · 인천 지역 전체를 당해 시 · 도로 봄)
			5년 이상~10년 미만	15	
			1년 이상~5년 미만	10	
			1년 미만	5	

※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처리기준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은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 (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 · 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2.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11. 25)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 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의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치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순위 경쟁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 위	주 택 형 (전용면적)	신 청 자 격	거주구분	접수일자	장소 및 시간	당첨자발표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 추첨제 신청자격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이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포함) ·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자로 접수되고 2순위 청약은 불가함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2008. 12. 1. (월)	• 접수장소 - 인터넷 : 국민은행 (www.kbstar.com) ·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 (www.apl2you.com) - KB모바일 Mbank, Kbank, Bankon • 접수시간 : 08:30 ~ 18:00	• 일시 : 2008. 12. 9 • 장소 : 당사 견본주택 • 문화일보 게재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 않음.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舊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예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1순위가 되신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가입자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분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2순위로 청약가능)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 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가점제 · 추첨제 신청자격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없음(모든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2008. 12. 2. (화)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 6개월이 경과한 분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8. 12. 3. (수)	• 접수장소 - 수협중앙회 전국 본 · 지점 • 접수시간 : 09:30 ~ 17:00	

※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방법 : 금융결제원 아파트 청약센터(www.apt2you.com)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에서 과거 당첨사실 조회 선택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당첨사실 조회 → 조회기준일 입력 → 공인인증서 조회 → 조회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 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시 유의하기 바람.
※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 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노약자 · 장애우 창구청약 가능 시간 : 09:30 ~ 16:30, 단,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만 가능]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초과 102㎡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2)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가 점 제	75%	50%
추 첨 제	25%	50%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신청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 점 항 목	가점상한	가 점 구 분	점 수	가 점 구 분	점 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 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 무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 미만(무주택자에 한함)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6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 자동으로 계산됨)
		6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 · 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 · 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 · 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 · 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가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